

제 464호

1974. 7. 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 덕 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 권 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제

제 867 호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1301 호 서울특별시세마을공공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 3

제 1382 호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시행규칙 6

제 1383 호 서울특별시삼나무에대한 등지세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 9

◎ 고 시

제 97 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전소)결정및
지적승인 12

제 98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경구장)결정및지적승인 ... 12

제 99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 13

제 100 호 비포판대영업등록 13

제 101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 및 지적승인 14

제 10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일부 변경승인 1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방 고

제 132 호	일단외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15
제 13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변경 및 대체지정공고	15
제 135 호	도시계획사업(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공사 완료공사.....	16
제 138 호	지하통로공사시행허가공고	17
제 139 호	지하통로공사시행허가공고	17
제 14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8
제 141 호	환지에정지계획일부변경을위한 공람공고	26
제 142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환지에정지 지정 일부 변경공고	27
제 143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시험일자변경시행공고 ...	27
제 144 호	서울특별시상복구호적, 병사용, 구청장직업개각공고 ...	28
제 146 호	준용하천(단축및삭제)변경	28
건설부공고제 73 호	김포 및 신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일부변경공고	29
마포구청공고제 20 호	학교시설용지에 관한 재결 신청공고 ...	30
◎ 사 명	3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67 호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20 조제 6 항 및 제 8 항중 "첨부
하여야 한다"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
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25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381 호

서울특별시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마을공동 (총
유) 재산"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처분
의 권능이 마을공동체 (비법인) 자체
에 속하고 그 사용수익의 권능은
마을공동체 각 구성원에 속하는
공동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제 3 조 (면제신청) ① 조례제 4 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세의 부과면제를 받
고자 하는자는 별지제 1 호서식에
의한 면제신청서와 부동산 등기부등
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에 의한 부과면제 신청을 받
은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
내에 조사 결정하고 별지제 2 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 1호서식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신청서

00구청장 귀하

소재지	새마을					
	재산					
총유물건	건물	구조		건명		용도
	토지	지목		지적		용도
	차량	차명		등록번호		용도
	기타					
면세대상내자유	세목	년도	기본		신청이유	

서울특별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제 4조 등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시세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00새마을

주소:

성명:



별지제 2호시시

새마을공동사업에 따른 시세면제통지서

주소:

상명:

년 월 일 귀하가 제출하신 시세면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소재지	새마을 계산					
물건	건물	구조		건평		용도
	토지	지목		지적		용도
	차량	차명		등록번호		용도
	기타					
면세	세목	년도	기분	세액	비고	
	세용					
결정유						
년 월 일						
OO구청장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25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82 호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주택재개발구역" 이라 함은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② "최초입주취득자" 라 함은 천물이 사실상 준공연락의 실시 취득자로서 최초로 입주한 자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의 준공일과 원시취득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준공신고서상의 준공일과 건축주를 말한다.

제 3 조 (경감신청등) ①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경감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 1 호사시

주택계획개발구역내건물임대한시세면제(경감)신청서

000구청장 귀하

구역명칭					
건물소재지					
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물	구조		건명		용도
준공	년월일			준공번호	
면제(경감)	세목			기분	
면제(경감)사유					

서울특별시 주택계획개발구역내 건물에 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경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③

별지제 2 호서식

시 세 면 제(경감) 통 지 서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년, 월, 일 귀하가 제출하신 주택재개발구역내건물에 대한 시세 면제(경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1. 구 역 명 칭

1. 건 물 소 재 지

1. 구조, 전명, 용도

조 증 평

1. 세목, 납기, 세액

세 년도 기본 원

1. 결 정 사 유

보 칠 일

0 0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면적에 관한 특별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25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383 호

서울특별시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면적에 관한 특별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면
적에 관한 특별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적신청) ① 조례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적당교과
하는 자는 별지제 1 호서식에 의한
면적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면적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로 부터 7 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별지제 2 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 1 호서식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 면제 신청서

OO구청장 귀하

경 작 자 주 소	
경 작 자 성 명	
밤 나무 소재 지	
경 작 면 적	주 소
수 령	
수 확 량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서울특별시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농지세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별지제 2호서식

농지세과세면제통지서

주 소

성 명

년 월 일 귀하가 제출하신 농지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밭나무소제지	
주 수	
수 명	
수 확 량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소 득 율	
세 액	년 기본 원
결 정 이 유	

년 월 일

구 청 장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97 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결정 및 지적승인

- 1.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결정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와 동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 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중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1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서울특별시중구남산동3가 11-5번지부근	2,050	

별첨: 도면표시와 갑음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중구청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98 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정구장) 결정 및 지적승인

- 1.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정구장) 결정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34 호

(73.11.5)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15

서울특별시장

시 설 조 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운동장 (정구장)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 302-48 의 1 필지	756평 (2,495)	

○ 서울특별시고시제 99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 승인

1.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 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조서

사 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광운전자공대 (학교)	서울특별시도봉구월계동 447-1부근일대	37,950㎡ (11,500평)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00 호
 비로판매영업등록

다음과 같이 비로판매영업등록을 하였기 비로단속법 시행령 제 6 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4. 7. 16.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등록또는 교부년월일	판매자주소, 성명 및 판매장소 제지	비로명칭	보증성분량	기타구적
1-3	등록 1974.7.16 유효기간 자: 1974.7.16 지: 1977.7.15	1.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도봉구가리동 2-40 김길희 2. 판매장소 서울특별시도봉구가리동 1가 25-33 한두비로판매상사	제 5 종 복합 비로 (액체) 일명 : 북살	질소 : 4% 이상 인산 : 4% 가리 : 3%	미량요소 중 과

○ 서울특별시고시제 101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및 지적 승인

1.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34 호(73. 가. 시설변경조서(운동장)

i. 1. 5)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19

서울특별시장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운동장	영등포구오류동 106 일대	㎡ 38,837	㎡ 25,510	㎡ 64,347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0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 일부 변경 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일부구간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가. 지적변경조서

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제 11항제 5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4. 7.23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정	종점	비고
기정	대로	1	14	35	3,125	사천교	간도면내리(광로 24)	일부구간공사시공선에 맞추어 지적 변경
변경	"	1	14	35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서대문구청에 보관함.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32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90 호 (69.12 26) 로 실시 계획인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완료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46 조 제 3 항 과 동법 제 85 조 제 1 항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 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2. 관제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11

서울특별시장

공사 완료개요

1. 사업집행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

동산 10-19 의 14 필

2. 사업명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 준공면적 : 14,782 평 (㎡)

4.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주 중

5. 사업기간 : 1969.6.16-74.2.26

6. 준공년월일 : 1974. 5.14

7. 준공도면 :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13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변경 및 대체지정공고

당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 기업체명,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및 대체지정 공고합니다.

1974. 7. .

서울특별시장

1. 변경지정									
변경전					변경후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329	주일산업(주)	동대문구민복동 965-3	배종만	가논섬엘벌	329	서우물산(주)	동대문구민복동 965-3	배종만	가논섬엘벌
448	신성기업사	성동구자양동 328-1	정영택	세타	448	성신실업(주)	성동구성수2가 63-5	정강택	세타
1118	신린실업(주)	관악구대방동 58-21	이시점	자수공예품	1118	(주)신린양행	관악구대방동 58-21	김종태	자수공예품

2. 대체지정									
지정위소					대체지정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450	공영전기제작소	성동구구의동 29-3	이현욱	다이오드	450	공영전기제작소	성동구구의동 29-3	황운용	다이오드
541	신창산업사	성북경동동 283-23	박기점	세타	541	신창통상(주)	성북경동동 383-23	박기점	세타
1504	한성공예산업사	영등포내발산동 53-6	김정오	나전칠기진유제품	1504	한영공예산업(주)	영등포내발산동 53-6	황근오	나전칠기진유제품

◎ 서울특별시 공고 135 호

도시계획사업(유류저장및 송유설비) 공사완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제1호(73.1.4)로 실시 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이 다음과 같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제 46조 제3항과 제 85조제 1항 및 전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시흥군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15

서울특별시장

- 사업장명 : 경기도시흥군과천면 수암리산 13-1 일대
-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사업시행자주명 :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 2가 64-5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사장 유 체 용
- 면적 : 92,400 평
- 사업시행기간 : 1973.2.12-74.4.10
- 준공도면 : 별첨(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38 호

지하통로공사시행허가공고

서울특별시가 도로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통로의 공사시행을 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 1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7.16

서울특별시장

허가내용

가. 수리가과

종로구종로 6가 289 의 3 동대문

종합시장(주) 대표이사 정시봉

나. 시설목적 : 지하통로 (도로)

다. 구 간 :

지하철동대문정류장~동대문종합

시장간

라.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

지하통로 1,178 미

마.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일

착공예정일 : 74. 3. 1

준공예정일 : 74. 7.30

○ 서울특별시공고제 139 호

지하통로공사시행허가공고

서울특별시가 도로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통로의 공사시행을 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 1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7.16

서울특별시장

허가내용

가. 수리가과

동대문구건농동 620 의 69

대왕상가(주) 대표이사 김 호 진

나. 시설목적 : 통로 (도로) 및 상가

다. 구 간 :

지하철청담리정류장-대왕상가간

라.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 지하통로 620 미

상 가 275 미

계 895 미

마.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일

착공예정일 : 74. 3. 1

준공예정일 : 74. 7.30

○ 서울특별시공고제 140 호

1974. 7. .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공 랫 개 요

1. 건설부고시 제2948호(66.12.17)로 고시된 당시 도봉구우이동 지내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 사업시행의지: 도봉구, 수유동, 쌍문동, 우이동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우이동 지내도로공사
3. 사업의규모: 폭원 25미터, 연장 2,280미터
4.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4. 6. . . ~ 7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조서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관 제 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도봉구 수유동				279~273	대	10	수유동 279-16	이.원.상	
2					279~272	"	12	산 1	우.대.용	
3					279~271	"	11	부산시대신동3가79	김.경.근	
4					279~270	"	44	동선동1가 84-2	황.재.홍	
5					279~269	"	13	수유동 345-2	김.경.원	
6					279~268	"	5	동소문동 6가 134-1	안.병.승	
7					279~129	"	16	화곡동 358-12	이.승.준	
8					279~267	"	46	수유동산 1	유.운.길 외	

순위	소재지	분할전포지			분할후포지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9					279-266	대	43	수유동상 1	윤운권의6	
10					279-265	•	32	•	•	
11	우이동				72-111	•	401	동소문동1가126	김근창	
12					72-119	•	23	희현동 46	김홍조	
13					72-118	•	21	김계군죽상면죽상리281	조삼환	
14	우이동				72-117	•	20	신당동상 1	박광규	
15					72-116	•	20	우이동 72-34	박승태	
16					72-115	•	21	중곡동 477	안병낙	
17					72-114	•	20	수유동 248-7	최순택	
18					72-113	•	8	273-18	장명구	
19					72-112	•	29.2	녹번동 137-37	이준용	
20	쌍문동				424-11	임	271	쌍문동 422	민원거	
21	우이동				산 59-8	•	108	매장동 6-6	박용배	
22	쌍문동				423-79	잡	10	소공동 116-1	주식회사 서울은행	
23					423-78	임	4.1	•	•	
24					423-77	•	14.3	•	•	
25					423-70	•	18.6	우이동 95-3	김순영	
26					423-69	•	20.6	•	•	
27	쌍문동				423-76	•	14.7	성북동 177-30	김순영외 3	
28					423-75	•	14.2	•	•	
29					423-74	대	23	미아동 510	계극삼외 1	
30					423-73	임	13	쌍문동 423-17	서대원	
31					423-21	•	20	•	•	
32					423-22	•	37	• 423-16	이외영	
33					423-25	•	58	마장동 451-7	박주현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주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칭 명	
34	양문동				403 - 27	임	74	우이동산 52	민원기	
35					424 - 4	·	216	대평로 1가 61-21	권철현	
36					424 - 18	·	63	·	·	
37					424 - 17	·	263	명문동 1가 33	성상영	
38					424 - 2	·	211	가회동 31 + 13	안동선	
39					424 - 16	·	11	·	·	
40		우이동				70 - 4	전	1	매장동 6 - 6	박용래
41						70 - 3	·	408	·	·
42						100 - 13	·	349	우이동 101	김교려
43						100 - 10	·	16	홍은동 71 - 68	김관순
44					68 - 20	대	8	쌍문동 421	이광수	
45					68 - 19	·	8	우이동 68-9	김찬수	
46					68 - 18	·	9	· 64	안범성	
47					68 - 17	·	9	· 68-5	이학사	
48					66 - 7	·	14	· 65-7	이봉덕	
49					68 - 16	·	11	· 68-1	박희봉	
50	쌍문동				64 - 13	·	4	마장동 231	강영조	
51					503 - 20	·	16	쌍문동 503-1	박봉진	
52					502 - 2	·	8	가회동 31-13	안동선	
53					503 - 26	·	12	쌍문동 503-1	박봉진	
54					503 - 25	·	1	·	·	
55					503 - 17	·	48	북아현동 123-31	임형빈	
56					503 - 22	전	51	·	·	
57					503 - 21	대	187	정릉동 175-6	문정숙	
58				503 - 24	·	141	우이동 45-1	정영택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용 자		부 속 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59	쌍문동				503-23	대	91	홍은동 5-36	정 인 숙	
60					507-20	건	113	쌍문동 507-4	이 학 진	
61					507-19	대	36	.	.	
62					507-18	건	32	.	.	
63					507-17	대	222	태평로 1가 61-21	김 순 자	
64					507-16	건	119	쌍문동 507-1	박 회 용	
65					507-25	.	4.6	우이동 64	권 덕 수	
66	쌍문동				507-24	.	1	쌍문동 507-10	박 경 용	
67					507-23	.	11	.	.	
68					508-22	.	62	효자동 129 청파동 3가 131	박 문 금 하 대 수	
69					507-21	대	24	.	.	
70					507-26	.	33	부아현동 156	박 용 환	
71					508-4	압	163	태평로 1가 61-31	권 철 권	
72					508-3	.	151	회현동 1가 100-27	김 순 자	
73					509-6	.	31	.	.	
74					509-5	대	14	쌍문동 509	제 단 범 송 복 원	
75	우이동				49-6	.	1	우이동 49	이 연 실	
76					44-3	.	144	44-1	이 천 봉	
77					44-1	.	112	.	.	
78	쌍문동				509-4	.	6	원남동 73-4	김 동 진	
79					510-2	.	53	쌍문동 510	정 국 영	
80					512-6	.	8	미아동상 111	김 우 영	
81					512-5	잡	4	아현동 347-16	최 학 순	
82	우이동				43-2	대	118	쌍문동 510	정 국 영	
83					40-3	잡	83	미아동상 111	방 일 실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84	우이동				40-4	잡	166	동천동3가243	방일선	
85					36-2	전	5	우이동36-1	안분감이	
86					39-5	•	255	동소문동6가3	김영곤	
87					8-13	대	155	관철동45-1	주식회사 삼화교통	
88					6-4	•	270	담십리동58-34	이용순	
89					11-2	•	21		•	
90					5-10	전	670	우이동5	최한웅	
91					5-9	대	114	세종로132	•	
92		우이동				5-8	대	146		•
93						4-2	임	11	청운동52-8	금강공업 Co
94					16-2	전	60	이문동344-5	백남준	
95					44-10	대	5	하일곡동90-152	김상현	
96					44-9	대	6	수유동279-5	이재복	
97					44-8	전	13	동소문동7가32	유인섭	
98					44-7	전	23	우이동45	정충환	
99					41-15	대	6	•42	한수천	
100					41-14	•	9	•	최산수 최인	
101					41-13	•	35	•	•	
102				32-1	•	8	•32	최성현 최인숙		
103				35-2	•	26	쌍문동298	이예숙		
104				40-2	전	24.6	우이동17	안분감이		
105	우이동				36-5	•	23	우이동36-3	송준호	
106					36-4	대	21	쌍문동355	문복선	
107					39-6	•	70	동소문동6가3	김영곤	
108					38-3	전	15	우이동10	김복산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출대상)			소 용 자			분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실 명	
109					8-13	대	18	우이동	57	유광전	
110					8-12	대	19	우이동	삼 3	차도굴	
111					7-4	대	19	우이동	8-7	김희택	
112					6-5	대	21	미아동	35-13	최봉수	
113					10-11	대	4	우이동	6-2	김지영	
114					12-3	대	23	우이동	106	최완용	
115					5-7	대	20				
116					13-2	대	11				
117					5-6	대	43				
118	우이동				15-5	대	28	우이동	15-1	박신준	
119					15-4	대	13			신석삼	
120					17-2	대	7	청운동	52-8	금강유업	
121					16-3	대	176	노교상동	106-69	김병주	
122					16-8	대	94	하왕실리동	973-9	김항근	
123					16-9	대	18	우이동	16-6	양순자	
124					4-19	임	22	울저문2가	199	메트로호텔	
125					4-17	대	58				
126					4-16	대	36	우이동	4	김성학	
127					4-21	대	37				
128					3-3	대	24	이문동	344-5	백남준	
129					3-2	전	54	창신동	197	박낙승	
130					4-7	대	43	울저문2가	199	메트로호텔	
131	우이동				4-9	임	44				
132					4-15	대	15	우이동	4	양병규	
133					4-10	대	253				

순번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자목	지적	지번	자목	지적	주소	성명	
134	우이동				4-11	임	704	솔지르2가 199	메트로호텔	
135					16-1	대	70	우이동 4	원종석	
136					12-1	대	0.7	" 5	최한웅	
137	수유동				279-239	대	45	수유동 산 1	황광수	
138					279-238	대	3	"	"	
139					279-7	대	11	수유동 279-7	정원준	
140					279-11	대	9	" 279-11	이희건	
141					279-12	대	9	" 279-12	임호동	
142					279-13	대	9	" 579-39	김성열	
143					279-14	대	16	" 279-14	송삼호	
144					279-15	대	19	" 279-15	이진영	
145					279-240	대	135	" 279-14	강금복	
146					279-241	대	66	" 279-69	한사복	
147					279-242	대	57	" 279-49	유원철	
148					279-243	대	44	" 279-48	신순중	
149					279-244	대	34	" 산 1	용세홍	
150					279-245	대	26	"	채원용	
151					279-246	대	26	" 279-130	김화규	
152					279-247	대	25	" 산 1	이창호외6	
153					279-248	대	28	" 279-79	선우용	
154					279-249	대	9	" 279-115	이문홍	
155					279-73	대	26	" 산 1	유문길외6	
156					279-119	대	12	" 279-119	이기영	
157					279-120	대	3	" 279-73	김필수	
158					279-121	대	15	" 279-121	"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갈)			소 용 자		분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상 당	
159	수유동				279-70	대	40	수유동 279-70	연 결 자	
160					279-211	"	10	" 279-211	김 철 수	
161					279-250	"	38	"	"	
162					279-251	"	6	" 279-71	홍 순 택	
163					279-252	"	39	"	"	
164					279-253	"	43	" 279-38	이 병 익	
165					279-254	"	30	인외동 18.101	조희규장녀	
166					279-255	"	46	"	"	
167					279-256	"	2	경남보심군보성읍 수유동 120	임 광 덕	
168					279-85	"	50	인외동 18.101	조희규장녀	
169					279-257	"	18	"	"	
170					279-258	"	62	"	"	
171					274-10	"	1	상수동 281-2	김 선 애	
172					279-31	"	672	예관동 70-18	이 임 회 외 1인	
173					272-10	"	0.3	안함동 85-11	김일신이경주	
174					272-11	"	40	수유동 273-12	한 상 갑	
175					273-28	"	10	"	"	
176					273-30	"	16	"	국 민 은 행	
177					272-12	"	150	"	"	
178					268-8	답	426	대조동 79-8 신문로 2가 1-124	유재용박복부	
179					268-5	대	8	수유동 268-3	교 철 영	
180					268-6	"	24	" 268-4	원 철 우	
181					268-7	"	24	" 268-1	방성주배갑	
182					267-2	"	253	신문로 2가 108-5	이 석 우	
183					279-259	"	2	수유동 삼 1	이창호외 6	

진 물 조 서							
No	소재지	진 물 구조	총평수	수용대량 평	주소		비고
					주소	과 명	
1	수유동 268-4	세민부락조세민와중	25.66	3.5	수유동 268-4	현영옥	
2	" 268-3	"	11.74	7.6	" 268-3	고재영	
3	" 274-4273-2	"	20.08	20.08	" 273-12	한상갑	
4	" 279-115	연와조스타보읍	6.26	4	" 279-116	이운태	
5	" 279-70	세민부락조세민와중	14.93	14.93	" 279-70	연영철	
6	" 279-15	" 세민와중	6.45	6.45	" 279-15	이진영	
7	" 279-13	"	5	5	" 576-39	김성열	
8	" 279-11	"	5	5	동두천읍생연리 59	김동수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1 호

환지예정지계획일부변경을위한
공 랑 공 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추가, 시흥 및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계획을 다음과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제 47조 제 55조, 제 3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규정제 25조, 제 1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공고한다
2. 환지 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구획정리 1 과 및 관할구청시 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것이나 미수형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1974. 7. 20

서울특별시 장

공 랑 개 요

1. 사업명 : 신림, 신림추가, 시흥 및 김포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 판악구봉천동 신림동 일부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발산동, 동촌동, 독산동 일부지역
3. 변경필지수 : 10 필지
4. 변경조서 및 도면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구획정리 1 과 및 관할구청 시 민봉사실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제 142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및환지예정지 지정일부변경공고

1. 서울특별시 사용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사업계획(도로계획) 일부를 별첨과 같이 변경인가하는 동시에 환지예정지를 변경지정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3조, 제 34조, 제 56조, 제 5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 제 11항 제 5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지 한다.
3.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예정지 변경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사업계획 및 환지예정지 변경도서(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1974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143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일자변경시행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19 호 (74.1.50) 로 공고된 74년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의 시행일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코자 공고한다.

1974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시험 구분

면허종별및구분	시 험 일 자		시 험 장 소
	변 경 전	변 경 후	
1종대형면허	4. 10월의 첫째화요일	9. 12 목요일 11. 14 "	서울특별시 면허시험장
1종보통면허	3. 9월의 첫째화요일	7. 3 화요일 11. 5 "	

면허종별및구분	시 험 일 차		시험장소
	변 경 전	변 경 후	
2종보통면허	4. 10월의 세제화요일	9.25 수요일 11.20 "	
1종특수면허	3. 9월의 네제목요일	10.10 수요일 12.11 "	
2종소형면허	3. 9월의 둘제목요일	10.17 목요일 12.19 "	
원동기면허	매 주 금 요 일	매 주 금 요 일	

2. 기 타 사 항

면허시험에 대한 상세한 것은 54.6092) 및 각경찰서 교통계에 서울특별시경찰국 면허제 (54-671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4 호

성복구호적. 병사용구청장
직인개각공고

성복구 호적. 병사용 구청장직인을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각하였기 동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

1974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개각사용일자; 1974.7.20.
2. 직인의 인명; 성복구청장인(호적. 병사용)
3. 인 의 형 상; 정사각형, 한글전서체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6 호

준용하천 (단축및삭제) 변경

하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당시 준용하천중 아래 하천에 대하여 하천구간을 단축 또는 삭제하였기 공고합니다. 관계 도면은 건설국 하수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974

서울특별시장 양 백 식

준용하천 단속 및 삭제내역

명 칭				종 결	시 점		구 분	비 고
분류	1지선	2지선	3지선		당 초	변 경		
한강	안양천	개화천	오류천	영등포 개봉동 개화천 합류점	영등포구 중동 47 개봉동 105,264	영등포 오류동 80	준용	단속
·	중방천	철계천	신당천	성동구 신당동 철계천 합류점	성동구 신당동 360-3 교량	삭제	·	삭제
·	·	중곡천	·	성동구 중곡동 중랑천 합류점	성동구 중곡동 9인거	삭제	·	·
·	·	방학천	·	도봉구 방학동 중랑천 합류점	도봉구 방학동 396,587	도봉구 방학동 41-7 (철교)	·	단속
·	안양천	도림천	예방천	영등포 신길동 도림천 합류점	영등포 상도동 34,211 288,722	영등포 상도동 34,211 722, 298-1	·	·

◎전 설 부 공 고 제 73 호

전설부공고 제 8호(68.1.23) 및
제 96호(70.9.3)로 사업시행인가된
바 있는 김포 및 신림지구 토지구

획 정리사업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폐와
같이 일부변경인가하였거 이를 공고한다.

1974년 7월 9일

전 설 부 관 공

1. 변경 사항

가. 김포지구 가로망 변경조서

로선명	폭원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광로 2 류 16 호선	40	5,802.10	230,142.27	4,062.10	161,542.57	연장 1,740m 축소(제척)

나. 신림지구 시장 변경조서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시장용지	381 부락	3,305.80	폐 지	폐 지	일반택지르변경

2. 기 타 ;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관계도서 생략).

◎마포구 청 공고 제 20 호

토지수용법시행령 제 17 조 2 항에 의거 학교시설용지에 관한 재결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4년 7월 15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학교(서울망원국민학교)

다. 기업예정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26-1 대 560.3 평

426-5 대 603.2 평

427-2 대 130 평

428-8 대 663.9 평

제 4 필지 1,957.4 평

라. 열람기간 ; 1974. 7. 15~1974.

7. 28(14일간)

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기간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시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 19 조에

의거 의결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의 통지를 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
소 등 불명으로 수취되지 않을 때
는 본 공고로 송달한 것으로 대신
합니다.

사 명

◎ 1974.6.27.

서울특별시 농림기정 허형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974.6.27.

대 통 령

◎ 1974.7.6

의약과 지방의무 (외무제장) 김상대
지방의무기좌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보건사회국의약과외무제장에 포함.

◎ 1974.7.11

마포구 지방행정사 정태구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사 이하기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동부병원 지방행정사 송재경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사 홍심완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사 이우환
종로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사 박지봉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사 고연상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사 김홍복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건설국 구장(시설부기감) 정현영
한강건설사업소장 겸무를 명함.

한강건설 지방시설부
사업소장 기 정현영
시설부기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건설국장에 포함.

건설국장 시설기감 이종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974년 7월 11일

대통령

2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과장과의 보함.

건설행정과 지방행정
주사 이윤복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근무를 명함.

농지국조경과 지방농림
기과 이희봉

◎ 1974.7.12

도시가스사업 지방행정
소 과장 사무관 이응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통령경호실 파견근무

(74.7.15~75.6.30)

북부부지사 지방농림
업소(소장) 기과 이희봉

◎ 1974.7.15

서대문구 지방행정
사 이규환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한강건설사업소관리과사무제장에 보함.

한강건설 지방행정
사업소 주사 최영태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근무를 명함.

시립교향악단 지방행정
주사 윤순화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근무를 명함.

수원과 지방행정
주사 황호완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 1974.7.16

마포구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정경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주택행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정태부

소년기술원 장에 보함.

소년기술원장 지방행정
사무관 박영근

여자기기술원 장에 보함.

여기기술원장 지방행정 사무관	김용마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이운영
성동부녀복지관장에 포함.		영동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동부녀 지방행정 복지관장 사무관	박국자	상봉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	전재희
동대문부녀복지관장에 포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원장 지방행정 주	장일현	영동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신동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상봉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	권봉수
© 1974. 7. 18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이재구	보건예방과 지방보건 기사보	서인석
보건예방과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이종근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윤진형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보건 원원	고동우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손기순
동대문구 지방보건 원원	이형근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보건 원원	신현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	안창원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	손일준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지병구
동대문구 지방보건 기사보	김동협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원원	조성현	동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권재봉
동대문구 지방보건 원원	김지한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보건 원원	신경태	중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최유근
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원보	김정구	중구보건소 지방보건 원원	강환구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중로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원보	김근환	서대문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원보	이규호
용산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중로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원보	한상훈	성북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원보	양재상
용산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중로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원보	이영범	서대문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원보	이병욱
동대문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중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중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원보	이원홍	서대문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원보	장재원
영등포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중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사보	강두진	보전에 방과 지방보전 기사보	이규남
영등포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보전소 지방보전 (임상병리) 기원보	한중수	환경과 지방보전 기사보	허병환
도봉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동부병원 지방보전 (임상병리) 기사보	분락빈	용산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사보	송만수
용산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전소 지방보전 (임상병리) 기사보	김광복	동대문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사보	김영제
영등포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중로구보전소 지방보전 (임상병리) 기사보	최수경	마포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사보	김성한
서대문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전소 지방보전 (임상병리) 기사보	안병익	용산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사보	박상은
중로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아동병원 지방보전 (임상병리) 기원보	박종오	성동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사보	한경우
동대문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사보	김형탁	성동구보전소 지방보전 기사보	송정호
보전에 방과 근무를 명함.		마포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사	최정삼	성동구도선동 지방행정서기보	박학우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사	박철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4.10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자 발령제 319호, 경제처분(감봉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사	윤정로	6월)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3월에 처함.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 1974. 7. 19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사	주경석	가 속 지방행정	유인홍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설소 주사보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사	이종국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사보	박말봉	성 동 구 지방행정	강철수
관건과 근무를 명함.		주사보	
서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사보	박찬계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양서출장소 지방기계지원보	정구갑	성 동 구 지방행정	신순득
본인 출두치 않아 74.7.1자		서기	
신규입용발령(인사 211-)을 동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일자로 취소함.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사	이성훈	중 구 지방행정	정경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서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5.17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자 발령제 483호 징계처분(감봉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6월)을 동일자로 변경 전체에		처함.	
처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p>동대문수도 지방행정 서기 조종문</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섬복구 근무를 명함.</p>	<p>종로구 지방행정 서기 정용진</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p>
<p>도봉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안영승</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p>	<p>종로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이무용</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마포구 근무를 명함.</p>
<p>중도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조용복</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동대문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임용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관악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조진상</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연포시험소 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박항식</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p>
<p>도봉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김영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동대문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김대경</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섬복구 근무를 명함.</p>
<p>성동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박판영</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영등포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우계봉</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종로구수도 지방행정 서기 김육삼</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성 동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김 창 희	동 대 문 구 지방토목 기 원 계량 2 과 근무를 명함.	남 광 대
성 동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김 성 우	성 동 구 지방건축 기 원 운영실장소 근무를 명함. 운영실장소 지방건축 기 원 성동구 근무를 명함.	나 영 찬 나 영 인
◎ 1974. 7. 20		계량 1 과 지방행정 주 사 건설행정과 파견(74. 7. 20 -74. 10. 19) 근무를 명함.	추 진 갑
천호출장소 지방토목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조 종 기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주 사 성동구 근무를 명함.	박 기 수
도 봉 구 지방토목 기 사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이 부 방	성 동 구 지방행정 주 사 여자기술원 근무를 명함.	김 주 용
서 대 문 구 지방토목 기 사 도봉구 근무를 명함.	김 창 희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주 사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기 사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강 우 작
구회정리 2 과 지방토목 기 사 도시계획과 근무를 명함.	우 길 하	여자기술원 지방행정 기 사 부녀사업관 근무를 명함.	유 경 숙
계량 2 과 지방토목 기 사 구회정리 2 과 근무를 명함.	박 회 진	성 북 구 지방행정 기 사 여자기술원 근무를 명함.	유 성 열
서 대 문 구 지방토목 기 원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고 안 용	부녀사업관 지방행정 기 사 성동구 근무를 명함.	임 남 자
서 대 문 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구회정리 2 과 근무를 명함.	유 의 상	공 무 원 교 육 원 관 부이사관 이사관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홍 석 철

<p>환경국장 부이사관 이사관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서기석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원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p>
<p>1974년 7월 20일 대 통 명</p>	<p>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원보 김상균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p>
<p>◎ 1974. 7.23 가축위생 지방수의 시험소 원 최성목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원 김영수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p>
<p>보광동 지방토목 수원지사사무소 기사보 김순일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봉 1월에 처함.</p>	<p>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이상원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p>
<p>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 문현철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봉 6월에 처함.</p>	<p>농정과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적기사보 장관진 중구파견(74. 8.30 까지) 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원보 박서홍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p>	<p>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원 강사현</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p>	<p>◎ 1974. 7.24 서대문구(특지 지방농림 과장직무대리) 기사 최중문 북부특지 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명함.</p>

<p>◎ 1974. 7. 25</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강원도 지방간호 양구군보건소 기원보 김유기 최재일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p>	<p>지방경제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5호봉을 급함. 도봉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정만교</p>
<p>감사담당관실 지방행정 주 이길택 서범교향약단 근무를 명함.</p>	<p>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p>
<p>문화공보실 지방행정 주 하건철</p>	<p>중구 근무를 명함.</p>
<p>감사담당관실외전 근무를 명함. 주무과(시정 지방비서관 지방담당관실 (3급을 파견근무중) 상 당) 박장근 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정흥근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p>
<p>영등포구 지방행정 당 산 2동 서기보시보 이인수 성북구 근무를 명함.</p>	<p>중로구 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국 서기관 한백 도시행정과장</p>
<p>◎ 1974. 7. 26</p>	<p>수도국수도행정담당관 직무대리를 명함.</p>
<p>마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최재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내무국 서기관 배운관 총무과장 시민회관장 직무대리겸무를 명함.</p>
<p>◎ 1974. 8. 1</p>	<p>감사관 서기관 손완수 감사담당관</p>
<p>경기도성남시 지방건축 도시과 기원보 정철수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원보에 입함. 4호봉을 급함.</p>	<p>감사관겸무대리를 명함. 보건사회국 서기관 이상덕 보건행정과장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장에 보함. 교육원교수부 서기관 박수복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장에 보함.</p>

<p>감시담당원실 지방행정 사무관 손동윤</p> <p>감사담당관 직무대리를 명함.</p> <p>내 부주장 이사관 김찬희</p>	<p>감사관 정무를 면함.</p> <p>수도국수도 행정담당관 부이사관 김상진</p> <p>건설국건설행정담당관에 보함.</p>
<p>서울특별시</p>	